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액’ 고려 및 지급의 의무화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8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29.

다.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 현행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훈련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중 훈련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훈련비 등의 지급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u>예비군부대</u> 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u>훈련비</u>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u>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u>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u> ----- ----- ----- <u>「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한 훈련비</u> ----- --- <u>지급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훈련은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따라 동원예비군훈련(동원훈련 I형, II형),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으로 구분됨.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정의)

1.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한다.
2. "동원예비군훈련"이란 간부 1~6년차, 병 1~4년차 예비군이 실시하는 훈련으로 다음 각 목의 훈련유형을 말한다.
 - 가. "동원훈련 I형(숙영)"이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지정된 소집부대에서 숙영하며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 I형"이라 한다.)
 - 나. "동원훈련 II형(비숙영)"이란 소집부대가 미지정된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비숙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이하 "동원훈련 II형"이라 한다.) 단,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을 말한다.
3.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한다.

□ 예비군대원에게는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급식비 및 훈련비는 훈련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되고 있음.

구 분	급식비	훈련비
동원훈련 I형 (2박3일 / 28H)	14,000원 (3끼 기준 / 부대 급식)	95,000원
동원훈련 II형 (4일 / 32H)	9,000원 (1끼 기준 / 도시락 지급)	50,000원
기본훈련 (1일 / 8H)	9,000원 (1끼 기준 / 도시락 지급)	10,000원
작계훈련 (2일 / 12H)	9,000원 (1끼 기준 / 도시락 지급)	10,000원

□ 훈련유형별 훈련비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대표적인 동원훈련 I형의 경우, 시간당 3,393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6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10,32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비군 대원의 훈련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구 분	훈련비	시간단위 훈련비
동원훈련 I형 (2박3일 / 28H)	95,000원	3,393원
동원훈련 II형 (4일 / 32H)	50,000원	1,563원
기본훈련 (1일 / 8H)	10,000원	1,250원
작계훈련 (2일 / 12H)	10,000원	833원

□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훈련비 등의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예비군의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훈련 참여 의욕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예비군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시 전력화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원인 만큼,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예비전력의 유지·관리와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방부 예산추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액 고려시 현재 688억 원 수준의 예비군훈련비 예산이 3,500~3,800억원 규모로 5배 이상 예산증액이 필요해져 과도한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훈련비 등의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 반해, 예비군 훈련은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 제공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연장선에 있는 공적 의무란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훈련비 산정에 있어서 적정 기준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 및 병무청은 현재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고려한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과 예비군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 I 형) 훈련비 등의 지급 근거인 「병역법」 제52조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는 예비군 훈련은 동원·기본·작계훈련 등의 유형에 따라 내용·기간·강도·위험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로, 이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일률적으로 연계하여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2028년 목표로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추계)

구 분	2027년			2028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계	-	-	2,029억	-	-	3,793억
동원훈련 I형 (2박3일 / 28H)	34만명	20만원	677억	33만명	33만원	1,085억
동원훈련 II형 (4일 / 32H)	34만명	16만원	542억	33만명	33만원	1,085억
기본훈련 (1일 / 8H)	92만명	4만원	380억	92만명	8.3만원	761억
작계훈련 (2일 / 12H)	52만명	8만원	430억	52만명	16.5만원	862억

- 2030년 목표로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추계)

구 분	2027년			2028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계	-	-	1,522억	-	-	2,167억
동원훈련 I형 (2박3일 / 28H)	34만명	15만원	507억	33만명	21만원	690억
동원훈련 II형 (4일 / 32H)	34만명	12만원	407억	33만명	18만원	592억
기본훈련 (1일 / 8H)	92만명	3만원	285억	92만명	4.5만원	415억
작계훈련 (2일 / 12H)	52만명	6만원	323억	52만명	9만원	470억

구 분	2029년			2030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대상 인원	훈련비 단가	예산 추계
계	-	-	2,930억	-	-	3,572억
동원훈련 I형 (2박3일 / 28H)	32만명	27만원	862억	31만명	33만원	1,024억
동원훈련 II형 (4일 / 32H)	32만명	26만원	829억	31만명	33만원	1,021억
기본훈련 (1일 / 8H)	89만명	6.5만원	581억	87만명	8.3만원	716억
작계훈련 (2일 / 12H)	51만명	13만원	658억	49만명	16.5만원	711억